

체육부 운영 규정

제정 2005. 10. 18.
제3차 개정 2017. 02. 15.

제1조(목적) 상지대학교 직제규정 제17조(부속기관) 제12항에 의거 상지대학교 체육부(이하 “체육부”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대학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4, 2014.06.25)

제2조(위치) 체육부는 **우리대학교에** 둔다.(개정 2014.06.25., 2017.02.15.)

제3조(사업 및 운영관리) ① **우리대학을 대표하여 대한체육회 등록된 가맹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를 출전하는 종목은 체육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신설 2017.02.15.)

② 체육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 종목별 선수관리
2. 훈련 및 대회출전 등에 **관리감독** 및 관련 행정업무 (개정 2017.02.15.)
3. **운영경비** 관련 행정업무 (개정 2017.02.15.)
4. 각 경기단체 및 체육회 관련 행정업무
5. 각종 후원금 및 지원금의 수입, 지출, 정산 등 관련 업무
6. 각 종목별 정보수집 및 분석업무
7. 예산책정 및 지출 등의 효율적인 관리업무
8. 각 선수들 취업, 경력, 경기성적 등 관리업무
9.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③ 체육부의 사업 및 운영관리의 주요사항 중 선수 관리 및 일반적 운영관리는 학생지원처장, 재정관리는 기획처장의 사전 협의를 거친다.

제4조(구성) ① 체육부에 부장을 두며,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및 4급의 직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부장은 체육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체육부의 각 운동부에는 감독 및 코치를 둘 수 있으며, 체육부장이 지휘·감독한다.

④ 체육부에는 행정업무를 위한 직원 또는 행정조교를 둘 수 있다.(개정 2014.06.25)

제5조(감독 및 코치) ① 각 운동부의 감독과 코치는 체육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감독과 코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수의 체력육성과 기본훈련, 진로상담
2. 합리적인 기술지도와 대내외 경기 지도감독
3. 기타 각 운동부에 관한 제반사항

제6조(재정) 체육부의 사업예산은 교비 및 외부기관(체육회 등) 지원금 또는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회계연도) 체육부의 회계연도는 상지대학교 회계연도와 같다.

제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084, 2005.10.18)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529, 2007.5.14)

이 규정은 200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472, 2014.6.25)

이 규정은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2, 2017.2.15.)
이 규정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